##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2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 장경태·신동근·박주민

박광온 • 전용기 • 오영환

홍정민 · 강득구 · 이소영

최혜영 · 장철민 · 고민정

김남국 · 강선우 · 이수진

윤영찬 • 조오섭 • 문진석

정청래 • 이규민 • 권인숙

민병덕 · 홍영표 · 윤영덕

서동용 · 민형배 의원

(26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 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 원회를 둘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 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 장후보자의"를 "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 의원후보자등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으로 한다.

6.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를 "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

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

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당

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보조금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	
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u>한다)</u>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②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	
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	
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	<u>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u>
<u>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u> 후원회	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
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후보자등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 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 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 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 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 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5. (생 략) <신 설>

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 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 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
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 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 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 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 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 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② (생 략)
  -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 령후보자등·<u>국회의원후보자등</u>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국회의원후보자
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경우

④ (생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 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 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 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 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 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 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 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 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 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 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 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없는 경우
  - <u>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u> <u>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u> <u>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u>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 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 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 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제 (생 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 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④ (생 략)

거의 우모사능폭마감일 우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1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100분의 10</u>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
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
는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
령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
<u>다.</u>
③・④ (현행과 같음)